

2022년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공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2022년도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7일

특허청장

1. 사업 개요

-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
 - *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원칙과 방법론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업화를 통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으로 표현하는 것
-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검토 등 그 가치를 평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지식재산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제공

2.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개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3. 지원 내용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최대 60% 지원 (단,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국고지원액 및 자기부담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청자 부담)
 - * 발명의 평가기관 :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특허청장이 지정 및 고시한 평가기관

○ 기본 지원율(최대 50%)

구분	평가 비용	지원 금액
지식재산 가치평가	평가견적서에 의함	▪ 평가 비용의 50% 이내를 국고 지원하며, 국고지원액 및 자기부담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청인 부담

- 우대 지원율(최대 10%p) : 아래 항목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 지원율에 최대 10%p 가산한 지원율이 적용되며, 해당 적격 증빙 제출 필수 (미제출 시 미적용) (☞공고문 5쪽 참고)

구분	내용	우대율
2030 청년기업	대표자가 만17세~39세(1983년생~2005년생)인 기업	10%p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특허청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	5%p
이노비즈기업	이노비즈 확인서 보유 기업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	1년내 특허청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을 신청한 기업	
녹색기술 인증기업	녹색성장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국가유공자 기업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기업	
여성기업	여성기업법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초기창업(3년이내)기업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	
우수IP보유 BIG3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관련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	
비수도권 지역소재 기업	소재지(본점)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인 기업	

(적용 예시) ① 벤처기업인 경우 5%p(총 55% 지원), ② 벤처기업이면서 초기창업기업인 경우 10%p(총 60% 지원), ③ 청년기업이면서 벤처기업인 경우 10%p(총 60% 지원)

□ 발명의 평가기관을 통한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작성을 지원

- 「지식재산평가보고서」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한 평가 결과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마케팅홍보,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
-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신청자는 아래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발명의 평가기관 >

평가기관	연락처	비고
(주)나이스디앤비	02-2122-1340	성능평가·시험분석이 필요 없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사업성, 시장성, 권리성, 기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나이스평가정보(주)	02-2124-6822	
(주)웍스	02-3153-7928	
(주)이크레더블	02-2101-9243	
(주)케이티지	042-335-1946	
특허법인 다나	02-6957-9931	
특허법인 다래	02-3475-7871	
특허법인 도담	031-605-4134	
한국평가데이터(주)	02-3215-2384	
한국농업기술진흥원	063-919-1345	
기술보증기금	02-2155-3774	
신용보증기금	053-430-437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2-3299-6023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54	
한국산업은행	02-787-6166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3415-8750	성능평가·시험분석 등이 요구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권리성, 기술성을 평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7575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0167	

4. 지원 절차



5. 심의 기준

□ 1차 심의(서류) 기준

심의항목	세부항목
기술성 평가 (50점)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30)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
활용성 평가 (50점)	활용계획의 타당성(30)
	신청자의 사업화 추진 여건(10)
	상용화 가능성(10)

□ 2차 심의(발표) 기준

심의항목	세부항목
기술성 평가 (30점)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10)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
활용성 평가 (40점)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15)
	신청자의 역량 및 활용 의지(15)
	상용화 및 시장진입 가능성(10)
1차 심의 결과 (30점)	1차 심의 결과 점수 환산(30)
가점 (10점)	가점 항목별 인정 여부 확인(10)

* 2차 심의(발표평가) 일정 및 절차는 별도 안내 예정

□ 가점항목

- 2019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기술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10점 한도 내에서 가점 부여

* 2차 심의 대상자 중 해당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 (별도 안내 예정)

No	가점	가점 항목
1	5점	○ 표준특허 (국제표준화기구 등 인증을 받은 특허)
2	5점	○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개인 또는 기업
3	2점	○ 특허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
4	2점	○ 신청자(대표자)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또는 여성
5	2점	○ 특허청이 주최하는 발명 관련 행사에서 수상한 개인 또는 기업
6	2점	○ 특허청이 주최하는 지원사업의 수혜기술 또는 기업
7	2점	○ 창업 3년 이내인 기업
8	2점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탁월판정 기업
9	2점	○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6. 신청접수 및 유의사항

□ (접수기간) 2022. 3. 17.(목) ~ 2022. 4. 5.(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www.kipa.org 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 회원가입(로그인) -> 지원사업 ->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Click -> 사업신청(온라인)

○ (제출서류)

- 사업화연계 활용계획서

-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 (발명의 평가기관이 발급한 견적서만 인정)

* 사업신청 시 제출하는 견적서는 발명의 평가기관명을 제외한 견적서[별첨1-2]를 제출

□ 우대 지원을 사유별 적격 증빙 (최종선정자 중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구 분	적격 증빙
2030 청년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기관: 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에 관한 사항' 상 대표이사의 생년이 1983년 이후 2005년 이내일 것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충족할 것)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말소사항 포함된 제출용 발급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공제 가입증서(발급기관: 기술보증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상품별 청약일자가 2년 이내일 것 -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ipmas.or.kr)에서 가입증서 출력
벤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확인서 사본(발급기관: 벤처기업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일 것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smes.go.kr/venturein)에서 확인서 출력
이노비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노비즈확인서 사본(발급기관: 이노비즈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발급일로부터 3년)일 것 - 이노비즈넷(innobiz.or.kr)에서 확인서 출력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확인서(발급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이후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신청 확인서 (*확인서는 사업명, 과제유형, 과제명, 신청일자 및 선정여부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소관기관 직인 포함)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센터 담당자에 문의
녹색기술 인증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기술 인증서(발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서 유효기간 이내(인증일로부터 6년)일 것 - 녹색인증 홈페이지(greencertif.or.kr)에서 확인서 출력
장애인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기업확인서(발급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서 출력
국가유공자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확인서(발급기관: 국가보훈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일 것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충족할 것) - 정부24 홈페이지(gov.kr)에서 신청 및 발급
여성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확인서(발급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서 출력
초기창업 (3년이내)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기관: 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성립연월일'이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말소사항 포함된 제출용 발급
우수IP 보유 BIG3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G3 기업 지원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BIG3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지원 확인서 (*사업명, 과제유형, 과제명, 신청일자 및 선정여부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사업명·세부과제명 등 내용상 BIG3 분야에 해당함을 표시, 소관기관 직인 포함) - 각 지원사업 담당자에 문의
비수도권 지역소재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발급기관: 세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발급

□ (유의사항)

- 구비서류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온라인 신청 전 “**사업화연계 활용계획서**”와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미리 작성한 후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자격사항은 신청한 특허·실용신안권의 최종권리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명의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 : 신청자가 법인대표라도 개인명의 권리인 경우, 개인자격으로 신청해야 함)
-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발명의 평가기관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IP금융연계(IP보증·담보대출·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은 가능합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되거나, 타 유사 정부지원사업 중복선정의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시 해당 사업 지원취소와 함께, 국고보조금 규정에 따라 환수 및 형사고발 조치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미체결 또는 자기부담금 미입금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 및 특허청의 각종 지원사업에 2년 이내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사업 문의

※ 문의처 안내 ※

- 사업 운영 및 관리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실 : 02-3459-2944

[별첨] 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신청 구비서류 서식 각 1부. 끝.